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2155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은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홍민지, 손태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27.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2020. 4. 28. 접수 제101198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4.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557 사건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21. 'C는 원고에게 221,064,000원 및 그중 21,06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각 2020.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는 2020.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0. 4. 2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2) 채무초과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221,064,000원 및 그중 21,06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각 2020.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C는 위 채무 외에도 최소 5억 2,7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 4호증, 을 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로부터 로봇 개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31.부터 2019. 5. 10.까지 합계 5억 2,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사실, E 등은 C를 상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C는 2020. 12. 3. 위 공소사실에 대해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21. 5.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1. 5.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C가 E에 대하여 위 5억 2,7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극재산

(1) 부동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39,866㎡중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1㎡ 당 2,560원이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원고 소유 부분의 가액은 51,028,480원($39,866 \times 2,560 \times 1/2$)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실제 가치가 더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가치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은 없다.

(2) 주식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액면가가 10,000원인 D의 주식 38,712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D는 채무초과상태 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이므로 가치는 0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갑 7호증(2021. 4. 1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신용분석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D는 기업등급이 'B'(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이고, 현금흐름등급이 'CR-4'(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인데, 이러한 분석결과만으로는 회사 가치가 0에 가깝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갑 7호증, 을 8,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D의 2019. 12. 31.자 기준의 자산총계는 6,709,211,923원, 부채총계는 4,656,586,852원, 자본총계는 2,052,625,071원(자본금은 875,000,000원, 이익잉여금은 1,177,625,071원)인 사실, 2020. 12. 31.자 기준의 자산총계는 3,769,323,871원, 부채총계는 2,645,513,487원, 자본총계는 1,123,810,384원(자본금은 875,000,000원, 이익잉여금은 248,810,38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D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본총계보다 부채총계보다 2배 이상으로서 이는 업종 평균(약 1.4배, 갑 7호증 11면 부채비율란 참조)에 비해 높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2019. 12. 31. 기준으로는 유동자산이 3,400,414,465원, 유동부채가

1,099,251,484원이고, 2020. 12. 31. 기준으로는 유동자산이 2,811,156,679원, 유동부채가 430,233,487원으로서 업종 평균보다 유동비율이 높으며, 단기간 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보유한 위 주식의 가치를 0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별지